

# [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3. 12. 1.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12. 1.

다. 상정일자 : 2003. 12. 6.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라. 의안번호 : 제 2003 - 62호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 그 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선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수도급수조례”에서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로 함  
(안 제명)

- 급수 공사 신청에 있어 세대별, 업종별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안 제6조 제5항)
-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5%인상 함 (안 제27조 제1항 별표2)
- 업종 단계를 통폐합 함 (안 제28조 별표3)
  - 현행 : 6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
  - 변경 : 4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 중수도요금의 감면비율을 변경함 (안 제38조 제4항)
  - 현행 : 가정용 50%, 업무용 40%
  - 변경 : 가정용 70%, 업무용 50%
-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30%, 세입증대 및 과징제도 발전등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4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중수도설치 대상 및 확인(제39조) ..... p 44

- 중수도 설치대상이 수도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로서 1일 1천㎡이상 사용하는 시설이 중수도 설치 대상인데 우리군에 해당시설이 있는지 등 향후 중수도 설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상수도 사용료 인상(제27조) .....p 41, p 49

## 상수도사용료 인상비교표

(단위 : 톤, 원, %)

업종별	현행		개정		인상율		타시군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금액(원)	비율(%)	창녕	김해
가정용	0~10	356	1~20	494	109	28	630	430
	11~20	414						
	21~30	471	21~30	642	171	36	810	620
	31~40	526						
	41~50	584	31이상	839	255	44	1,060	950
	51이상	641						
업무용	0~20	517	1~30	607	67	11	780	520
	21~50	586	31~50	728	142	24	940	730
	51~100	661	51~100	849	188	28	1,100	830
	101~300	736	101~300	971	235	32	1,250	1,130
	301이상	805	301이상	1,092	287	36	1,410	1,130
영업용	0~30	575	1~30	607	32	6	780	960
	31~50	661	31~50	728	67	10	940	960
	51~100	747	51~100	849	102	14	1,100	1,360
	101이상	833	101~300	971	138	17	1,250	1,650
			301이상	1,092	259	31	1,410	1,650
욕탕2종	0~200	885	1~30	607	△ 278	△ 31	1,010	
	201~500	1,026	31~50	728	△ 157	△ 15	1,220	
	501~1,000	1,168	51~100	849	△ 36	△ 3	1,420	
	1,001이상	1,311	101~300	971	39	3	1,620	
			301이상	1,092	△ 76	△ 6	1,620	
욕탕1종	0~200	506	1~200	638	132	26	1,010	670
	201~300	586	201~300	766	180	31	1,200	1,020
	301~500	667	301~500	893	226	34	1,420	1,020
	501이상	748	501이상	1,020	272	36	1,620	1,050
산업용			1톤당	568				

- 평균적으로 25% 인상하였다 하나 가정용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이 28%인상되었고 사용량이 많을 수록 인상폭이 높아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누진제가 적용되었음.
- 종전 욕탕1종은 26%~36%까지 인상된 반면 욕탕 2종은

일반용으로 분류되면서 6%~31%까지 인하되었으나  
우리군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1개업소에 불과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리를 도입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업종별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통폐합하며 상수도 요금도 평균적으로 25% 정도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

####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